

안 내 문

안녕하십니까? 군 마트를 이용해주시는 모든 국방가족께 감사드리며, '26-1차 군인복지 운영위원회 의결에 따른 군마트 이용대상자 변경사항을 안내드립니다.

군 마트는 「군인복지기본법」 및 「군인복지기본법 시행령」에 따라 군인의 특수한 생활환경을 지원하기 위한 판매시설로, **군인 및 군인가족의 주거시설 내 생필품 구매 등 기초생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·운영하고** 있습니다. 국방부는 군인 및 군인가족 외에도 현재 군에 소속되어 국방에 기여하고 있는 자 및 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를 위한 희생과 공헌이 인정된 자 등에 대한 예우로 심의를 통해 군 마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.

군 마트는 군인 및 군인가족의 주거시설 규모에 맞추어 설치되었으나 최근 군 마트의 실제 이용자가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 매장 대기시간 및 혼잡도가 증가하고 관사지역의 주차난 등 생활여건에 지장을 초래하여 영외마트가 폐쇄되기도 하는 등 **군 마트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여** 국방부는 이러한 상황 등을 고려한 '26-1차 군인복지 운영위원회 심의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.

- | |
|--|
| <p>① 참전유공자 유족 : 참전유공자 배우자 한해 적용 ('26. 9. 1.부)
*참전유공자 배우자의 직계 존·비속 비대상</p> <p>② 경호처 직원 : 마트이용권한 회수 ('26. 9. 1.부)</p> <p>③ 협약대학, 군특성화고, 영내 특별 교육 기간중 해당 영내마트 이용 ('26. 9. 1.부)</p> <p>④ 서울 현충원 공무원 : 마트이용 임시권한 회수 ('26.11. 1.부)</p> <p>⑤ 병역명문가 : 본인 이용시 가족동반 미허용 ('27. 1. 1.부)
* 병역명문가 본인만 군 마트 이용 가능</p> |
|--|

아울러 군인가족의 직계가족 등 모든 군 마트 이용자는 마트 출입시 **이용 권한이 없는 가족은 동반할 수 없으니** 양해 바랍니다.

군 마트를 애용해 주시는 국방가족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, 닥내 평안과 행복을 기원합니다. 감사합니다. (담당자 : 국군복지단 판매관리과 마트운영관리담당(02-2225-6333))

2026. 9. 1.

국 군 복 지 단